

 금융감독원	보도자료			
 금융위원회	보도	배포시부터 보도 가능	배포	2020.3.23.(월) 10:00
책임자	책임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윤병원(02-2100-2530)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김용태(02-3145-7120)		담당자	서승리 사무관 (02-2100-2536) 조영범 팀장 (02-3145-7140)

## 제 목 : P2P 투자하기 전, 투자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

- P2P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른 소비자경보(주의) 발령

▣ 소비자경보 2020-3호			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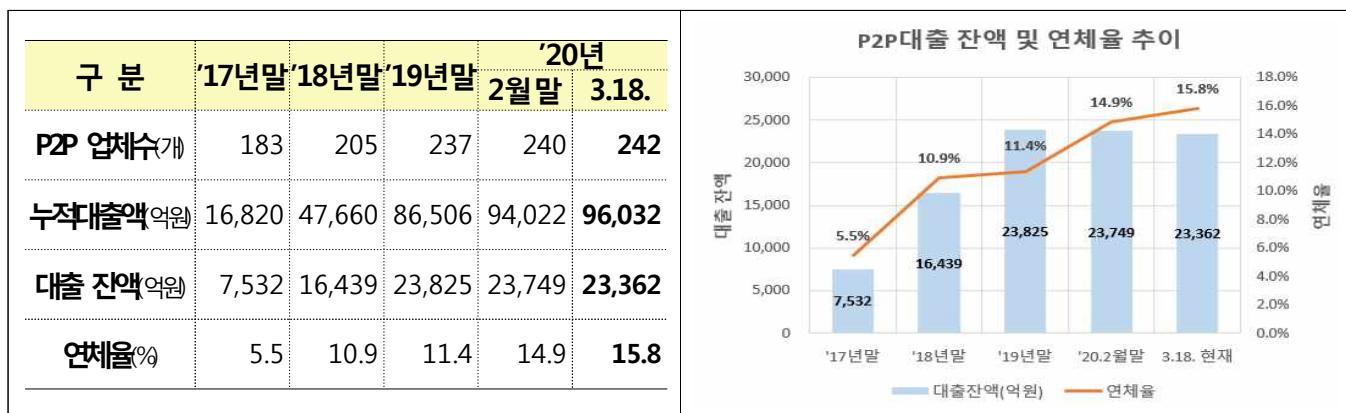
- ◆ '19.11월 제정된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온투법")의 시행('20.8.27.)을 앞두고 **P2P대출 규모가 확대<sup>\*</sup>되고 있는 가운데**
  - \* ('17말)0.8조원 → ('18말)1.6조원 → ('19말)2.4조원 → ('20.2말)2.4조원
- **연체율이 15%를 초과**(3.18일 현재 **15.8%**)하는 등 **계속 상승<sup>\*</sup>하고 있어**, 투자자들의 **신중한 투자를 당부**드리기 위해 **소비자 경보(주의 단계)**를 다시 **발령<sup>\*\*</sup>**
  - \* ('17말)5.5% → ('18말)10.9% → ('19말)11.4% → ('20.2말)14.9%→ (3.18일)**15.8%**
  - \*\* 「안전한 P2P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」('19.11.7.) 내용의 소비자경보 既 발령
    - 투자자들은 **P2P대출상품**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**고위험·고수익**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, **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시기 바람**
- ◆ 아울러,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에 맞춰 **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** 위해 P2P업체들이 '**P2P대출 가이드라인'**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는 한편,
  -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·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**현장 검사를 적극 실시**하여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임

##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

※ 대출잔액·연체율은 P2P대출 관련 통계서비스 업체인 미드레이트 공시자료 기준  
(144개사, 사기·횡령 사고 등으로 협회탈퇴 또는 모집중단 업체 포함)

- '20.3.18일 현재 P2P대출 잔액은 2.3조원으로 '17년 이후 지속 증가\*  
\* ('17말)0.8조원 → ('18말)1.6조원 → ('19말)2.4조원→ ('20.2말)2.4조원 → (3.18일)2.3조원
- 연체율(30일 이상)은 15.8%로 '17년 이후 계속 상승\*하였으며, 전년 말 이후 큰 폭(+4.4%p) 상승  
\* ('17말)5.5% → ('18말)10.9% → ('19말)11.4% → ('20.2말)14.9%→ (3.18일)**15.8%**

< P2P 업체 현황 >



### (참고) P2P 상품별 연체율

- ◆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(44개사)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상품(부동산 PF, 부동산 담보대출 등)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'20.2월말 현재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(100%)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.9%로 나머지 28개사(평균 연체율 7.3%)에 비해 2.9배 높음

## 2 P2P대출 투자자 유의사항

- ①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,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②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.
- ③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하세요.
- ④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하세요.
- ⑤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
- ⑥ 고위험 · 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·분산투자가 필요합니다.

## ①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,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

- P2P대출은 차입자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,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內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음

## ②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

- P2P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확인\* (<http://fine.fss.or.kr>)

\* P2P연계대부업은 온투법 시행 이후 1년(~'21.8.27.)까지만 영위 가능

## ③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

- P2P업체의 연체율 등 재무정보\*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상품정보, 연체내역, 업체 평판 등을 확인할 필요

\* 온투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고, 위반시 과태료 부과(3천만원 이하)

## ④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 필요

- 리워드 과다지급 등의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및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

## ⑤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

- 부동산 대출 투자시 담보물건, 채권순위(선·후순위),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

※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 "P2P대출을 통해 부동산PF 상품에 투자시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"('17.9.22.) 참조

## ⑥ 고위험·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·분산투자 필요

-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하여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할 필요

※ 'P2P대출 단계별 투자자 점검 항목'은 <붙임> 참조

## 붙임

## P2P대출 단계별 투자자 점검 항목

단계	확인할 내용	비 고
P2P업체 선택	연계대부업체의 등록 여부 확인	- <a href="http://fine.fss.or.kr">http://fine.fss.or.kr</a> (금융소비자 정보포털) 접속 → “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”
	과도한 리워드 이벤트 실시 여부 확인	- <b>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능력보다 이벤트로 투자자를 협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</b> - 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및 대출 부실화 가능성도 높음
	“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” 도입 여부 및 투자금 입금계좌 예금주 확인	- <b>P2P업체의 파산·해산시 제3자의 가압류</b> 등으로부터 투자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지 확인 - “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” 도입여부 확인 - 투자금 입금시 P2P업체 또는 임직원 명의 계좌가 아닌 <b>본인 명의의 가상계좌</b> 로 입금되는지 확인
	P2P업체의 사이버 보안수준 확인	- 웹 취약점 점검 여부, 암호화 프로토콜(https 등) 사용 여부,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(PIMS) 등을 확인 ⇒ 보안 수준이 높은 업체를 선택
P2P대출 투자 단계	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임에 유의	- 차입자 채무불이행시 투자자에게 손실이 귀속되는 <b>고위험 상품</b> 이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에 투자금 회수도 보장되지 않음 유의 - P2P업체는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해준다고 광고하나 다수 P2P업체의 <b>손실보전 재원이 충분하지 않음</b> 유의
	부동산 PF상품 투자시 공시사항 확인	- 복잡한 사업구조, 다수의 이해관계자, 시행사 등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<b>리스크가 높은 상품</b> - 일반적으로 <b>건축예정 토지</b> 가 담보로 설정되거나 담보 없이 PF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<b>부동산 경기 하락시 자산가치 하락</b> 또는 <b>미분양 사태</b>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 - 투자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<b>담보물건, 채권순위</b> (선·후순위), <b>담보권 행사방식</b> * 등의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 -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입지조건 등을 확인
	자산유동화대출의 우선수익권 교부순위 확인	- 대부분 <b>후순위</b> (금융권 대출·시공사 공사대금 등이 선순위)대출로서, ‘우선수익권’을 담보로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<b>담보권으로서 효력은 제한적</b> - 미분양 등 사업실패시 <b>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며, 부동산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대출임을 유의</b>
	만기 연장 또는 재대출되는 방식 투자상품 여부 확인	- 신규 상품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실질은 <b>투자자를 재모집</b> 하여 만기연장 또는 재대출하는 방법으로 <b>부동산 PF 사업</b> 또는 차입자의 <b>부실</b> 등을 <b>이연시킬 가능성</b> - 차입자의 대출만기와 투자 상품의 <b>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둘려막기 영업 가능성</b> - 투자 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<b>동일차주 대출 현황, 만기연장 또는 재대출 여부, 대출만기일자</b> 등 확인
투자완료 이후	(부동산 관련 P2P대출)투자 이후 공사 진행 상황 등 지속 모니터링	- P2P업체의 <b>공시사항</b> 참고 - 등기부등본 조회·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상황 지속 모니터링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